

19세기 말 면주전 접방(接房)의 감소와 도중(都中)의 대응¹⁾

김 미 성

(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박사후연수연구원)

머리말

1. 접방인의 감소와 면주전의 위기

1) 접방의 낙본(落本)과 퇴거(退去)

2) 면주전의 인적·물적 위기

2. 도중의 대응

1) 지불 가격 인상과 인원 충원책

2) 간부진의 실무 투입과 도중의 성격 변화

맺음말

머리말

개항 이후 19세기 후반의 시전은 필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 상업 기구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개항 이후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조선후기에서도 시전은 성장하는 ‘사상’에 의해 그 세가 꺾여 가는 수동적 존재로 그려졌다. 그러나 조선의 시전은 그 부침(浮沈)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부터 최말기까지 존속했던 공식적 중추적 상업기구로서, 시기별 주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든 대응하여 살아남았던 존재이기도 했다. 특히 육의전은 신해통공 이후에도 금난전권을 보장받아 갑오개혁 때까지 특권을 유지하였던 중추적 시전이였다.

최종적으로 소멸하고 말았다는 결과론에서 벗어나다면, 또 그것이 ‘전근대적 어용 특권기구’에 불과했다는 근대적 평가에서 벗어나다면, 장기간 존속하였던 시전의 최후 해체 과정은 충분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전이라는 제도와 조직은 결국 소멸해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었던 개개인의 사람들은 시전이라는 틀 밖에서도 연속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후반의 시전을 내부의 시전에서 바라볼 필요성, 능동적 존재로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개항 이후 시전의 변화 양상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된 바 있다. 먼저, 육의전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29040)

1882년 이래 청·일본 상인들과의 경쟁에 노출된 후 그 금난전권이 폐지되고 결국 그 조직이 몰락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리되었다.²⁾ 이때 육의전의 권력의존적 성격은 결국 일제 권력 앞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패인으로 설명되었다. 한편, 19세기 후반 시전의 구체적인 실태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의 소개와 활용은 이 시기 시전 연구의 구체성을 더해 주었다. 일본 교토(京都)대학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던 방대한 양의 면주전 문서가 소개되었고,³⁾ 이를 토대로 개항 이후 육의전 중 하나였던 면주전이 쇠퇴하는 과정이 외국 상품 유통 및 국가 재정 위기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되었다.⁴⁾ 한편, 1878년부터 1906년까지의 내수사 회계장부와 시전진배문서의 분석을 통해 당시 왕실재정의 궁핍화로 인해 그 부담이 시전에 전가되는 양상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⁵⁾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통해, 개항 이후 시전의 쇠퇴 과정과 그 원인이 상당 부분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시전의 어용성, 특권성, 왕실 또는 정부와의 밀접성에 초점을 두었고 그 몰락 원인도 그러한 측면에서 찾아내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는 시전의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시전 개별 구성원의 대응 움직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논외로 처리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시전이 한 덩어리의 집단으로 여겨지며 정부와의 관계만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자료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찬사료는 물론이고, 시전이 스스로 남긴 시전 문서들도 도중(都中) 차원에서 남긴 자료이므로 시전이 집단적 차원에서 정부와 맺었던 관계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자료에 나타나는 시전 도중 조직의 성격을 시전의 전체의 성격으로 등치시키는 연구도 있었다. 면주전 문서에 ‘개별 상인에 의한 면주 판매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전은 상인에 의해 조직된 상업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외부기관’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⁶⁾ 반면, 이에 대해 면주전의 주된 영업이 민간 판매에서 정부에 대한 진배로 바뀌었던 것은 개항 이후의 특수한 사정일 뿐이며, 본래 ‘시전의 주된 영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2) 전우용, 2002 「근대 종로의 상가(商街)와 상인(商人)」 『종로: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 전우용, 2004 「근대 이행기(1894~1919) 서울 시전 상업의 변화」 『서울학연구』 22

3) 고동환, 2002 「조선후기 시전(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 須川英徳, 2003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研究紀要』 34

4) 고동환, 2008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면주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 고동환, 2013,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 須川英徳, 2010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Owen Miller, 2007 “The Silk Merchants of Myonjujo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on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Owen Miller, 2010 「시전-국가 간 거리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 조영준, 2008 「19世紀後半 内需司와 市廛의 去來實態」 『서울학연구』 31

6) 須川英徳, 2010 앞의 논문, 372쪽, 374~377쪽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반론도 있었다.⁷⁾

여기서 시전 문서의 자료적 특징과 시전 연구의 논점을 재검토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설명되었듯이, 시전 조직은 조합 조직에 해당하는 도중(都中)과 영업조직에 해당하는 방(房)으로 구분된다는 점⁸⁾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공동의 번영과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조합 조직이었던 도중은, 개별 도원들의 구체적인 상업활동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다.⁹⁾ 도중의 주요 업무는 대정부거래였다. 각방의 개별 상인들이 진배(進排) 물량을 마련하여 도중에 바치면, 도중은 이를 절차에 따라 정부에 진배를 하고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아[受價] 관리하며 각방 상인들에게 값을 쳐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⁰⁾ 따라서 시전 도중이 남긴 기록은 대부분 대정부거래에 관한 내용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료의 특징일 뿐, 이를 근거로 시전이 대정부거래만을 했던 조직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자료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시전 각방 점포에서 실제의 영업을 했던 개별 상인들의 존재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시전과 정부의 관계보다는 시전 조직 내부 개별 구성원들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19세기 말 시전의 해체 과정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시전의 각방에서 이루어진 상거래 기록이 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면주전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의 몇 자료들은 이러한 자료적 아쉬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채워줄 수 있는 자료라 여겨진다.

첫째, 면주전 도중 회의록에 해당하는 『별출차지맹문등록(別出次知盟文謄錄)』이다.¹¹⁾ 면주전 도중은 여러 명의 차지(次知)를 별도로 차출하여 도중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당시의 현안들을 논의하게 하도록 하였는데, 「별출차지맹문입장(別出次知盟文立章)」은 그 논의 결과를 대방(大房)에 보고하고 그 처결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별출차지맹문등록』은 이러한 낱장의 「별출차지맹문입장」들을 종합 기록한 것으로, 1888년 11월부터 1892년 11월까지의 기록과 1898년 1월부터 1913년 6월까지의 기록이 현전하고 있다. 이 자료도 도중 차원에서 남긴 기록이긴 하지만, 그 회의 내용 중에 각방 ‘접방인(接房人)’들의 사정에 대한 논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면주전 영업인들의 존재양태를 엿볼 수 있는 주요한 간접 사료이다.

둘째, 면주전 구성원들의 인원수를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세책(房

7) 고동환, 2013 앞의 책, 223쪽 각주108

8) 고동환, 2002 앞의 논문 ; 고동환, 2013 앞의 책 ; 김미성, 2017 「조선후기 면주전과 명주 생산·유통구조」,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9) 고동환, 2013 앞의 책, 206~207쪽

10)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145쪽, 154쪽

11) 『別出次知盟文謄錄』은 2책이 현전하고 있다. 1888년(무자년) 11월부터 1892년(임진년) 11월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표제가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河合文庫, 호-6 199984)이며, 1898년(무술년) 1월부터 1913년(계축년) 6월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표제가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河合文庫, 호-8 199937)이다.

稅冊)』¹²⁾과 『삭찬분아책(朔饌分兒冊)』¹³⁾ 등이다. 『방세책』은 면주전 대방에서 납부 받은 각방의 방세 액수와 그 납부자를 종합하여 기록한 장부로, 1864년부터 1902년까지 중간 결락 없는 기록을 전하고 있어서, 당시 면주전 접방인 수의 연속적 추이를 보여주는 직접적 자료이다. 한편, 『삭찬분아책』에는 1864년부터 1906년까지 면주전 대방과 비방의 원액(元額)이 매년 명시되고 있어서 면주전 구성원의 인원수 변화를 재확인하는 자료로서 함께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19세기 말 면주전 각방 접방인의 감소 추세와 그로 인해 발생한 면주전 업무의 차질, 그에 대한 도종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세기 말 시전의 몰락과정이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고 각방 조직과 도종 조직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당시 시전 상인의 입체적 모습을 복원하고 개별 상인의 연속성¹⁴⁾을 전망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1. 접방인의 감소와 면주전의 위기

1) 접방의 낙본(落本)과 퇴거(退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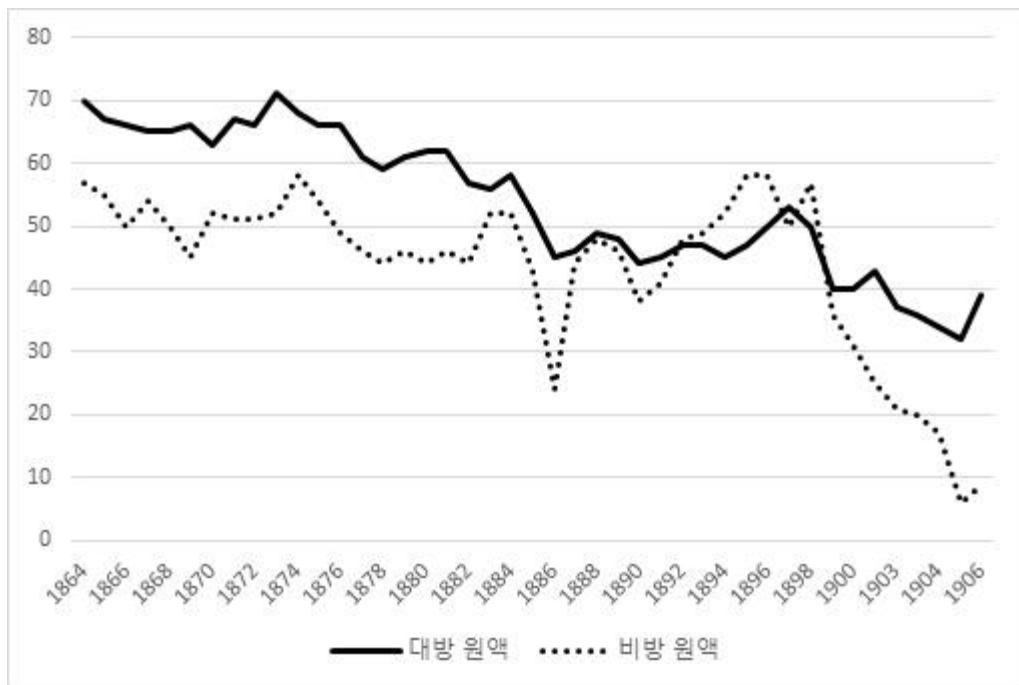
19세기 들어 면주전의 인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음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1832년에 193명으로 확인되는 면주전 도원은 1870년대에 12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1892년에는 면주전 전방에서 영업하는 도원이 40명 이하로 줄었으며 1905년에는 영업인이 1~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¹⁵⁾ 그러나 각종 기록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면주전 인원수는 명확히 어느 집단을 기준으로 셈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체 도원의 수인지, 대방의 인원수인지, 비방의 인원수인지, 각방 영업인의 수인지, 특정 내부조직의 인원수인지 따지지 않고, 각 자료에서

12) 『房稅冊』(河合文庫, ㄱ-54 199904)의 원표제는 ‘乙丑正月房稅冊’이다.

13) 『朔饌分兒冊』은 총 3책이 현전하고 있다. 1864년부터 1888년까지의 『乙丑正月日朔饌分兒冊』(河合文庫, ㄱ-22 199897), 1889년부터 1897년까지의 『己丑十月日朔饌分兒冊』(河合文庫, ㄱ-12 199939), 1898년부터 1906년까지의 『戊戌四月日朔饌分兒冊』(河合文庫, ㅎ-9 199983)가 그것이다. 이상 각 10번부터 14번까지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 소장 자료들은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유출자료영인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14) 개별 상인들의 근대적 상회사 또는 기업 설립 사례에 대해서는 전우용, 2002 앞의 논문 ; 홍성찬, 2002 『韓末·日帝下의 서울 鐘路商人 研究 -布木商 金泰熙家の ‘壽南商會’ 運營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16 ; 김동운, 2001 『박승직상점 1882~1951년』, 해안 등의 연구가 참조된다. 특히 직물 관계 회사의 설립 사례는 권태익, 1980 『韓末·日帝初期 서울地方의 織物業』 『한국문화』 1에서 정리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시전 구성원들 대다수가 시전에서 빠져나간 후 어디로 갔는지는 명확히 규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15) 고동환, 2013 앞의 책, 227~228쪽 참조



<그림 1> 1864~1906년 면주전 대방(大房)과 비방(裨房)의 원액(元額) 변화

(전거: 『삭찬분아책』)

드러나는 인원수를 시기별로 단순 비교·대조할 경우 잘못된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면주전 인원수의 전반적 감소 양상은 변함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인원수의 변화 추이는 도중 간부진과 각방 영업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자료로 『삭찬분아책』이 있다. 이 장부는 면주전 도원들에게 매달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분아(分兒)한 삭찬(朔饌)과 세찬(歲饌)을 기록한 장부이다, 매년 12월 18일마다 세찬을 분아하면서 그 분아 대상이 되는 대방 원액과 비방 원액을 명시하고 있다. 대방은 시전의 상층 간부진들의 조직이었고, 비방은 ‘군중(群

16) 須川英德, 2010 앞의 논문, 353쪽에서는 “면주전 구성원의 정규는 80명”이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1832년의 193명, 1870~1913년의 120명 인원수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 각각의 인원수를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명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80명의 정원”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면주전 대방의 원액을 지칭한 것이거나 또는 면주전 산하 세폐계(歲幣契)에서 세폐주의 공인권(貢人權)을 가지고 있었던 인원수였으리라 짐작된다[면주전 『歲幣貢案冊』(河合文庫, 1-69 199909)에 기재된 인원이 80명이며, 면주전 『膳錄』(국립중앙도서관 古2109-20)의 『歲幣受價』항목에서 세폐주 진배 후 수가(受價)한 것을 분아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인원이 ‘80액(額)’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면주전 내 일부 집단의 인원수를 면주전 전체의 인원수로 오인한 가운데 논증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衆 또는 軍中)’으로 지칭되는 일반 도원들의 조직이었다.¹⁷⁾ 따라서 대방과 비방의 인원수 비교는 당시 면주전 도중 간부진과 일반 도원들의 인원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다행히 『삭찬분아책』은 1864년부터 1906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대방과 비방의 원액을 기록하고 있어 그 변화 추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과 같이, 1864년부터 1906년까지 면주전 대방의 인원과 비방의 인원은 전반적으로 동반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감소폭이 큰 부분은 1886년과 1899년 비방 인원의 급락이다. 1886년의 감소는 1년 만에 다시 반등되었으나, 1899년의 감소는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마지막 소멸 단계로까지 이어진다. 반면, 대방 인원의 경우 비방 인원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의외로 상당수를 유지하고 있다. 즉 면주전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비방 인원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대방 인원의 추이는 그 양상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비방이 일반 도원들의 집합체에 해당하므로, 각방에 입점하여 영업하였던 상인들의 수를 추정할 때에는 비방 인원의 수가 주요하게 참고 될 수 있다. 물론 비방 구성원이 모두 각방 영업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방 인원수를 곧 각방 인원수로 치환할 수는 없다. 다만, 각방 영업인이 비방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리라 짐작되므로, 그 변화 추이만큼은 유사했으리라 생각된다. 이 유사성은 『방세책』에서 추출되는 각방 방세 납부자 인원수와 대조했을 때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방세책』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마다 도중에 방세를 납부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¹⁹⁾ 그 방세 납부자 수를 정리하여 <그림 1>의 비방 원액 그래프와 합친 것이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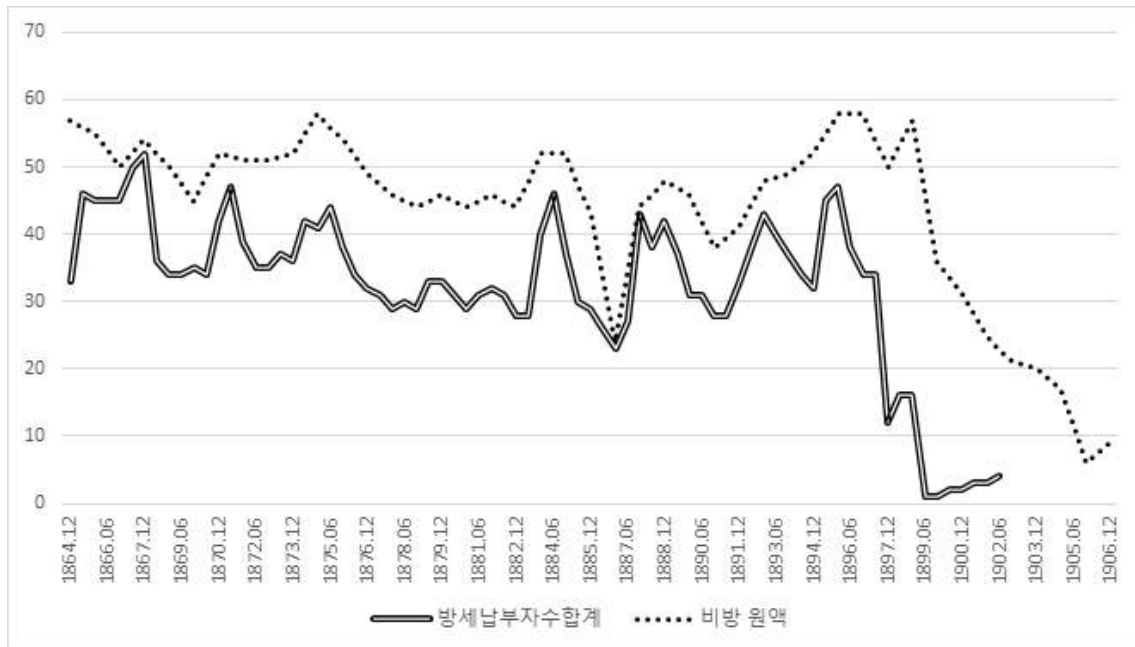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방 원액 수와 방세 납부자 수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비방 인원이 항상 방세 납부자 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그 변화곡선의 추이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로써 각방 방세 납부자는 비방 구성원의 가장 큰 부분집합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방세 납부자 수 역시 곧바로 각방의 영업인 수로 등치시키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있다. 각방에서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방세 납부자 수는 각방 인원 수와 가장 가까운 수치에 해당 될 것이라 판단된다.

때에 따라서는 비방 인원수와 방세 납부자 수가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1867년 무렵과 1886년 무렵이 그 예이다. 특히 1886년은 비방 인원과 방세 납부자 수의 감소 추세 끝에 최저점을 기록한 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때 1886년 12월

17) 고동환, 2013 앞의 책, 242쪽 ;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46쪽

18) 『(乙丑正月日)朔饌分兒冊』(河合文庫, イ-22 199897) ; 『(己丑十月日)朔饌分兒冊』(河合文庫, キ-12 199939) ; 『(戊戌四月日)朔饌分兒冊』(河合文庫, ホ-9 199983)

19) 『(乙丑正月)房稅冊』(河合文庫, イ-54 199904)



<그림 2> 1864~1906년 면주전 비방 원액과 각방 방세 납부자 수의 비교

(전거: 『삭찬분아책』과 『방세책』)

방세 납부자 수는 23명으로 1886년 12월 18일 비방 원액 24명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또 1887년 그 인원이 반등될 때에도 비방 인원과 방세 납부자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즉 이때에는 비방 인원이 급격히 줄었으므로, 각방 인원 이외의 비방 인원이 있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 비방 인원수 회복도 각방 인원을 채움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각방 인원 감소의 구체적 전개 상황은 면주전 도중의 회의록에 해당하는 『별출차지맹문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1888년 11월의 기록부터 남아있다. 이때는 이미 각방의 인원이 급감했다가 반등되던 때였다. 이미 인원 감소의 심각성을 체감한 이후였으므로, 『별출차지맹문등록』에는 인원수 감소 문제가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별출차지맹문등록』은 1888년부터 1892년까지의 연속적 기록²⁰⁾과 1898년부터 1913년까지의 연속적 기록²¹⁾이 현전하고 있는데, 그 회의 안건들의 수를 집산하면 393건이다.²²⁾ 그중 인원 감소 문제가 언급된 안건을 추려

20)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河合文庫, 호-6 199984)

21)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河合文庫, 호-8 199937)

22) 「별출차지맹문입장」은 각 항목의 시작마다 ‘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하였는데, 입장마다 첫 시작 두 항목은 ‘대방이 차지를 별출하여 논의하게 했다는 내용’과 ‘차지들이 보고를 올린다’는 형식상의 내용에 해당되므로, 이 항목들은 회의안건 산출 개수에서 제외했다. 또 어떤 항목에서는 후록(後錄)을 달기도 하였는데, 이 후록도 산출 개수에서 제외했다.

보면 약 37건 정도로 전체의 약 10%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인원 감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인원 감소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도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비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별출차지맹문등록』에서는 각방의 인원을 ‘접방(接房)’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접방(接房)이란, 시전의 실질적 영업 점포에 해당하는 각 방(房)에 들어와 영업을 하는 행위 또는 그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나타난다. 면주전의 각방은 종로 대로변에 위치한 제1방·제2방·제3방과 피맛골 뒤편에 위치한 후1방·후2방, 그리고 별도의 장소에 추가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3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²³⁾ 이들 방에 들어와 방세(房稅)와 분전(分錢)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접방’ 또는 ‘접방인’이라고 했다.

접방인을 들이고 그들에게 분전을 분획하는 일은 매년 정월에 진행되었다. 각방의 1년간 매매 상황과 대출 현황을 조사한 후에 이듬해 1월에 차지가 그 허실(虛實)을 논의하여 분획을 결정하였다.²⁴⁾ 실제로 면주전 『별출차지맹문등록』에서는 매년 1월마다 ‘각방 분획 사정’이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등장한다.²⁵⁾

그러나 접방인의 사정은 1888년 무렵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현전하는 『별출차지맹문등록』의 기록이 시작되는 1888년 11월에는 이미 접방인이 퇴거(退去)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²⁶⁾ 또 본래 연중에는 방을 반납하고 시장에서 내쫓는 것[納房追市]과 방을 새로 들이고 시장을 여는 것[新接開市]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당시에는 봄에 납방(納房, 방을 반납)하고 나가서 가을에 다시 접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까봐 우려하는 상황이었다.²⁷⁾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납방’이었다. 접방인이 방을 반납[納房]하고 나가는 일이 빈번해지자 별출차지들은 그 문을 닫는 것[鎖門]을 특별히 허락한다고 하였다.²⁸⁾

23) 須川英德, 2010 앞의 논문, 353쪽 ;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65쪽.

24)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2면, 무자년(1888) 11월 9일, “本以分劃查正之法 自有古規 無他一□□(年之)內 買賣高歇 物貨多寡 審察然後 翌年正月 大次知所論 其虛實查正變通也.”

25)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4면, 기축년(1889) 1월 20일 ; 39면, 경인년(1890) 1월 18일 ; 67면, 신묘년(1891) 1월 22일 ; 93면, 임진년(1892) 1월 17일 ;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2면, 무술년(1898) 1월 19일 ; 24면, 기해년(1899) 1월 20일 ; 41면, 신축년(1901) 1월 22일. 그 내용은 각방을 사정하여 원분(元分)과 가분(加分)을 정하여 배분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 거둔 총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분획 후록’이라는 제목의 후록(後錄)으로 정리되어 첨부되고 있다.

26)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3면, 무자년(1888) 11월 9일, “一 大房出送公事內 接房人退去事公論之教亦教是乎所 大抵納房人段 據然變通 事理不當 然而形勢不致 事之有難 不得已納房 則不無變通 可謂其勢兩難. 自此以後 若有納房之人 其時等內形勢有無 事之□□(來歷?) 視其動靜然後 特爲施行是遣 許施鎖門後 或有開閉之端 更爲接房單子奉上施行爲白齊.”

27)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3면, 무자년(1888) 11월 9일, “如此則後弊不少 春納房秋接房 非一非再 當此之時 生頗多端 何以防塞乎?”

28)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3면, 무자년(1888) 11월 9일. 물론 면주전 접방인의 퇴거 사례는 1888년 그 이전부터도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877년 면주전 제2방의 접방인이었던 백봉규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수행할 길이 없으므로’ 두 차례의 세(稅)만 더 납부하고

접방인의 퇴거로 인한 인원수 감소의 문제는 1890년 무렵에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890년부터 “근래 인원이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다거나²⁹⁾ “접방이 회소”해졌다거나³⁰⁾ “접방이 웅색한 폐단”³¹⁾ 등이 자주 거론되었다. 1892년에도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有退無進]”³²⁾ 상황이 지속되었다. 면주전의 이러한 사정은 1892년 정부측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면주전) 시전 점포는 대부분 문을 닫거나 철거하여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사정이 매우 불쌍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³³⁾ 1898년의 ‘각방 분획 사정’에서는 분획 대상에서 제1방과 후1방이 통째로 빠져 있었고,³⁴⁾ 분획 대상에 포함되었던 나머지 3개 방도 ‘허방(虛房)’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³⁵⁾ 이 무렵에는 1~2명의 접방인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³⁶⁾

접방인들의 납방·퇴거에 대한 별출차지들의 대응도 1888년에 비해 1891년부터는 훨씬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된다. 1888년 11월 납방인의 쇄문을 허락할 당시에는, 그 후에 납방인이 다시 문을 열려면 다시 접방단자(接房單子)를 받아서 시행하라고 하였다.³⁷⁾ 이때까지만 해도 면주전 도중은 납방인들의 쇄문은 허락하되 나중에 납방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1890년에는 7월에는 납방하려는 사람들에게 6개월의 말미를 주었고,³⁸⁾ 1891년 3월에는 12개월의 기한을 다시 정하였다.³⁹⁾ 그러나 1891년 7월이 되면, 접방인이 납방을 하면 “영원히 방색(防塞)”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재안효주벌(齎案效周罰)’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⁴⁰⁾ 즉 면주전 도중은 1890년 경 납방퇴거의 문제를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건잡을 수 없이 접방이 줄어들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면주전 도중에 최후의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출차지맹문등록』에 나타나는 이같은 접방인 감소 추이는, 앞서 살펴본 『방세책』에 근거한 방세 납부자 수의 변화 추이와도 연결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1890년 무렵은 반등되었던 인원수가 다시 급감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후 두 차례의

서 퇴거하게 해달라고 면주전 대방에게 소지를 올렸다. 이때 면주전 대방은 백봉규의 요청대로 두 차례의 납세 후 퇴거하도록 허락하였다[『日本所在韓國古文書(한국사료총서 제46집)』, 국사편찬위원회, 京都大學所藏韓國古文書 綿絁塵關係文書 所志類 二(문서번호: 1209)].

29)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42면, 경인년(1890) 1월 18일

30)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81면, 신묘년(1891) 7월 2일, “到今事勢 接房稀少畝除良”

31)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79면, 신묘년(1891) 6월 20일

32)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03면, 임진년(1892) 9월 7일

33) 『비변사등록』 273책, 고종 29년 12월 6일

34)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4면, 무술년(1898) 1월 19일

35)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5면, 무술년(1898) 1월 21일

36)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2면, 무술년(1898) 1월 19일 ; 7면, 무술년(1898) 3월 13일

37)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3면, 무자년(1888) 11월 9일

38)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55면, 경인년(1890) 7월 29일

39)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74면, 신묘년(1891) 3월 2일

40)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81면, 신묘년(1891) 7월 2일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1896년 이후로는 회복 불능의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이는 『별출차지맹문등록』에서 매년 1월 이루어지던 ‘각방 분획 사정’이 유명무실해지던 때와 맞물린다.

이토록 면주전의 접방인들이 대거 퇴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면주 값의 상승⁴¹⁾과 그로 인한 ‘낙본(落本)’ 때문이었다. 『별출차지맹문등록』에서는 어떤 회의 안전에 대해 논의할 때 서두에 “근래에 주물(紬物)이 등귀하여 낙본함이 곱절이 넘는다[近來紬物翔貴 落本陪蓰]”는 말이 일종의 관용구처럼 반복되고 있다.⁴²⁾ “접방이 낙본하여 이익이 없는 폐단[接房落本無利之弊]”⁴³⁾은 당시 면주전 도중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시전의 접방인이 되는 것이 더 이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본’ 즉 본전을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자, 접방인들은 시전을 떠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말 당시 종로 면주전 인근에는 신식 직물 상점들이 새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면주전 서쪽에 맞닿아 있었던 수진상전(壽進床塵) 자리에는 ‘수남상회(壽南商會)’라는 포목상점이 문을 열었다.⁴⁴⁾ 면주전 동쪽에 맞닿아 있었던 백목전 도가에는 1900년 ‘종로직조사’가 설립되었고 신식 직기(織機)가 설치되었으며,⁴⁵⁾ 1905년에는 ‘창신사’가 설립되었다.⁴⁶⁾ 1908년 무렵에는 수남상회의 동쪽에 해당하는 종로1가 60~62번지까지 모두 주단·모직·포목 등의 직물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정렬하고 있었다.⁴⁷⁾ 기존의 직물 시전들이 각각 중국산 주단, 국산 면주, 포목, 저포 등 자기 담당 물종으로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이때에는 더 이상 그런 구분 없이 직물 일반을 함께 취급하는 상점들이 생겨났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인들은 면주전의 틀 속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개개인의 접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시전에 접방하는 것이 더 이상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실리하는 조건이 되자 자연스레 시전을 떠나게 되었다. 일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시전의 경계에서 동요하는 이들도 있었으나,⁴⁸⁾ 시전은 더 이상 매력적인 상업 공간이 아니었으므로 상인들의 이탈은 건잡을 수 없었다.

41) 『(戊子)別出次知盟文騰錄』 54면, 경인년(1890) 7월 29일

42) 『(戊子)別出次知盟文騰錄』 31면, 기축년(1889) 7월 22일 ; 48면, 경인년(1890) 6월 21일 ; 49면, 경인년(1890) 7월 7일 ; 54면, 경인년(1890) 7월 29일 ; 73면, 신묘년(1891) 3월 2일 ; 80면, 신묘년(1891) 7월 2일

43) 『(戊子)別出次知盟文騰錄』 80면, 신묘년(1891) 7월 2일

44) 홍성찬, 2002 앞의 논문, 224쪽

45) 권태억, 1980 앞의 논문, 154쪽 ; 『황성신문』 1900년 5월 7일(2면 3단)

46) 전우용, 2002 앞의 논문, 144쪽

47) 홍성찬, 2002 앞의 논문, 230쪽

48) 1898년 1월 태씨 십좌는 방을 폐업했다가 3월에 다시 문을 열고 출입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해 별출차지들은 다시 분획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戊戌)別出次知盟文騰錄』 10면, 3월 28일]. 1900년에도 출시인(出市人)이 문을 열고 접방하는 일이 발각된 바 있었다[『(戊戌)別出次知盟文騰錄』 37면, 경자년(1900) 1월 27일].

2) 면주전의 인적·물적 위기

접방인은 시전의 근간이 되는 이들이었다. 첫째, 그들은 종로 대로변 시전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하던 실질적 구성원이었고, 둘째, 정부에 진배해야 하는 물량을 복정(卜定) 받아 직접 마련[措備]하여 도중에 납품하던 사람들이었으며,⁴⁹⁾ 셋째, 시전 도중에 영업세 개념의 분전(分錢)을 납부하는 구성원들이었다.⁵⁰⁾ 이러한 접방인의 감소는 곧 시전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접방인 감소는 다음과 같은 각종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첫째, 시전으로서의 역(役)을 수행할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다. 시역(市役) 중 가장 기본은 책판(責辦) 또는 진배(進排)라 불리는 관수물자 조달의 의무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전에서 진배 물량의 실질적 조달은 각방의 접방인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접방인이 줄어들면서 진배 물량의 확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시전은 진배 외에도 국상(國喪)이나 산릉역(山陵役), 궁궐수리도배역 등의 잡역에도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⁵¹⁾ 19세기 후반 당시에는 시전인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기보다는 대리 응역자를 세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⁵²⁾ 명목상의 응역자는 시전 구성원이었고 그 대리 응역자에게 방구문(防口文) 또는 고가(雇價)를 지불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 면주전에서 제반 응역에 대해서는 비방(裨房)에서 관할하였던 것을 볼 때,⁵³⁾ 응역의 주축은 주로 접방인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접방인들의 감소는 곧 응역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근래 인원수가 적어져 허다한 응역을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게 되었다.⁵⁴⁾

둘째, 면주전 내 실무를 담당할 인원도 부족하게 되었다. 면주전은 어떤 임무를 책임질 차지를 정할 때에도, 접방인들 중에서 적임자를 차출했다. 상의원에 급대주(給代紬)를 진배하는 일을 맡는 차지는, 접방인 중에 투표[鈔簿]를 통해 선출된 사람[出筭人]으로 정했다.⁵⁵⁾ 또, 면주전 산하의 각 소(所) 조직의 소임(所任)들은 모두 접방인이 수행하는 역이었다고 한다.⁵⁶⁾ 세폐의 진배를 맡았던 세폐계의 자금 관리소로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폐소(補幣所)⁵⁷⁾의 소임(所任)도 접방인들 중

49)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140쪽

50) 고동환, 2013, 앞의 책, 252~253쪽

51) 변광석, 2001 『朝鮮後期 市廛商人 研究』, 해안 ; 고동환, 2013 앞의 책, 343~344쪽

52) Owen Miller, 2007 앞의 논문 ; 고동환, 2013 앞의 책, 347쪽 ; 김미성, 2018 「조선 후기 시전의 노동력 고용과 工錢·雇價 지출」 『한국문화』 82, 363~368쪽

53) 김미성, 2018 위의 논문, 368쪽

54)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06면, 임진년(1892) 9월 17일

55)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5면, 기축년(1889) 1월 20일 ; 39면, 경인년(1890) 1월 18일

56)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3면, 무술년(1898) 1월 19일, “各所所任 卽接房人隨行之役”

57)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53쪽 각주223 참조

‘초실인(稍實人)’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윤회로 번갈아 가면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⁵⁸⁾ 도가(都家)의 업무에도 접방인이 차출되었다. 도가는 “도중의 중요한 물품을 봉수(撻授)하는 곳”으로 막중한 임무에 해당되므로 “초실한 접방 중에 사람을 택하여 거행”하였다고 한다.⁵⁹⁾

이렇듯 접방인은 실무직에의 차출 대상이었는데, 접방인이 줄어들자 실무직의 차출도 어려워졌다. 1898년에는 접방인이 불과 1~2명밖에 없어서 각소 소임을 수대로 차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⁰⁾ 각종 진배 절차의 실무를 맡았던 유사(有司)의 역(役)도, 1892년까지 40명 정원이었던 것이⁶¹⁾ 1898년 무렵에는 2명으로 줄어 있었고 그마저도 인원 충원이 어려워 1명으로 줄인다고 하였다.⁶²⁾

인원 부족의 문제는 실제 영업인었던 접방인과 실무직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도중의 고위직 간부층에서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 및 직임에 대한 기피현상이 벌어졌다. 1890년 12월에 별출차지는 삼좌, 오좌, 십좌 등의 고위 간부층들이 공석(公席) 즉 공원(公員)의 자리를 까닭 없이 기피[厭避]하는 일에 대해 공론하였고, 이들을 ‘영판신래벌(永判新來罰)’로 처벌하기로 하였다.⁶³⁾ 이러한 대방 고위 간부층의 직임 기피 현상은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시되었다.⁶⁴⁾ 직임자가 중간에 교체되는 일도 빈번하였다.⁶⁵⁾

이러한 기피 현상 때문이었던지, 좌상(座上, 삼좌·오좌·십좌의 통칭)의 인원에도 결원이 생기고,⁶⁶⁾ 본래의 인원을 채우기 어려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본래 삼좌는 5명, 오좌는 10명이 정원이었는데, 1900년에는 오좌에 결원이 생겼을 뿐 아니라 그 아래 자리인 십좌도 4~5명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때 오좌의 인원은 7명으로 줄었고,⁶⁷⁾ 1901년에는 다시 5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⁶⁸⁾

셋째, 인원수의 감소와 직임에 대한 기피 현상은 도중 내 기강의 문란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1890년 1월 차지들은 “근래 법 기강이 해이해져” 유사, 장무, 사환이 그 임무를 태만하게 거행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하였다. 이들이 심지어 도중의 공사(公事)마저도 지체하고 트집을 잡는다[生煩]고 하였다.⁶⁹⁾ 때로는 욕설과 다툼이 일어나

58)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78면, 신묘년(1891) 6월 20일

59)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30면, 기해년(1899) 3월 19일. 도가의 일을 맡아보기 위해 차출된 도원은 『都家差出冊』(河合文庫, Ⅰ-42 199899)에서 그 명부가 확인된다.

60)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2면, 무술년(1898) 1월 19일

61)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103면, 임진년(1892) 9월 7일

62)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17면, 무술년(1898) 7월 26일

63)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64면, 경인년(1890) 12월 22일

64)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71면, 신묘년(1891) 1월 27일 ;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29면, 기해년(1899) 3월 19일

65)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74면, 신묘년(1891) 3월 2일

66)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74면, 신묘년(1891) 3월 2일

67)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38면, 경자년(1900) 2월 24일

68)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43면, 신축년(1901) 1월 22일

69)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43면, 경인년(1890) 1월 18일

는 사건들도 보인다. 1890년 1월 고제철(高濟喆)이라는 도원이 비방(裨房)의 수석(首席) 앞에서 불손한 언사를 내뱉은 문제로 인하여 ‘재안효주벌’을 받았다.⁷⁰⁾ 1899년에는 어떤 말단의 도원이 술주정을 하며 도중을 욕하고 무리를 짓고 작당하여 좌상(座上) 간부진 댁에 가서 욕설을 한 사건도 있었다.⁷¹⁾

임원들의 근태도 문제시 되었다. 이들은 묘시에 출근해서 해시에 퇴근[卯仕亥罷]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1891년 당시에는 “근래 인정(人情)이 옛날 같지 않고, 법기강이 해이해져” 매일 출근하지 않고 제시간에 퇴근하는 이가 3~4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⁷²⁾ 1903년 경에는 삼좌와 오좌 모두가 출근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⁷³⁾ 회좌(會座)를 할 때에도 결석자가 많고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나가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⁷⁴⁾ 1901년에는 삼좌와 오좌의 결석이 많아지자 대리자[署理]를 세우도록 하기도 하였다.⁷⁵⁾

셋째, 인원 감소 문제는 결국 경제적 문제로도 이어졌다. 일차적으로는 각방의 분획전이 줄어들었다. 1892년까지만 해도 각방에 부과된 분획전의 총합은 80.5냥 정도로, 기본 5개 방이었던 제1·2·3방과 후1·2방에 적절히 배분되어 있었다.⁷⁶⁾ 그런데 1898년이 되면 분획의 대상에서 제1방과 후1방이 빠져 있고, 나머지 3개 방 제2·3방과 후2방에게만 총합 13냥이 분획되고 있었다.⁷⁷⁾ 1년치 각방 분획전 수입이 80.5냥에서 13냥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 그마저도 각 소의 소임을 맡기기 위한 허방(虛房)이었으므로 그들의 분획전은 곧바로 면제되기에 이르렀다.⁷⁸⁾ 각방의 분전(分錢)은 실제로 매매를 하는 사람에는 당연히 거두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방을 반납한 사람들에게는 분전을 거둘 수 없었다.⁷⁹⁾ 1899년 단계에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 몇몇에게만 개별적으로 분전을 받았을 뿐이었으며, 1902년 이후로는 더 이상 매년 정월 행해지던 ‘각방 분획 사정’도 논의되지 않게 된다.

딱히 분전 수입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접방인의 감소는 곧 경제적 기반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면주전 도중의 차지들이 매년 1월 ‘각방 분획 사정’을 하고서 다음으로 한 일은 ‘초실인(稍實人)을 차출’하는 일이었다.⁸⁰⁾ 원접방(元接房)의 분

70)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46면, 경인년(1890) 1월 27일

71)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29면, 기해년(1899) 3월 19일

72)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67면, 신묘년(1891) 1월 22일

73)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55면, 계묘년(1903) 1월 12일

74)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04면, 임진년(1892) 9월 7일

75)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43면, 신축년(1901) 1월 22일

76)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경인년(1890) 1월 18일 ; 신묘년(1891) 1월 22일 ; 임진년(1892) 1월 17일

77)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4면, 무술년(1898) 1월 19일

78)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5면, 무술년(1898) 1월 21일

79)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28면, 기해년(1899) 3월 19일

80)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5면, 기축년(1889) 1월 20일 ; 39면, 경인년(1890) 1월 18일 ; 67면, 신묘년(1891) 1월 22일 ; 94면, 임진년(1892) 1월 17일 ;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2면, 무술년(1898) 1월 19일 ; 24면, 기해년(1899) 1월 20일 ; 41면, 신축년(1901) 1월 22일

획전 납부 내역을 토대로 장기간 충실했던 4~6인을 택하여 ‘초실인’으로 정하였다.⁸¹⁾ 초실인은 그 성실성이 입증된 접방인으로, 도중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의지처가 되었으며,⁸²⁾ 따라서 자금 대출의 면에서 우대를 받은 이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면주전 산하 각 계·소의 『전장등록(傳掌謄錄)』에는 매 분기 결산 때마다 시봉수인(時撻授人), 족잉류인(族仍留人), 도잉류인(都仍留人), 사대(私貸) 명목의 대출 관리 현황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초실인’의 항목이 따로 존재한다.⁸³⁾ 그 항목 밑에는 초실인의 명단과 각각에게 맡겨진 금액의 원금[本]이 기재되어 있다. 즉 초실인은 어느 대출 명목과는 다른 명목과 조건으로 시전 자금을 맡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접방인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초실인’을 선정하여 자금을 맡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1900년대 면주전 도중의 부채는 수만 냥으로⁸⁴⁾ ‘산더미’ 같았다고 한다.⁸⁵⁾ 이 부채는 단순히 접방인의 감소 때문만으로는 볼 수 없으며, 정부로부터의 ‘미수가(未受價)’ 문제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접방인의 감소는 경제적 위기의 극복 가능성과 미래의 회복력마저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으므로, 그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시전이라는 집단의 전체적 몰락은 물론 대정부거래관계의 위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었지만, 각 개별 시전 조직이 실질적으로 와해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체적 위기는 접방인의 이탈에서부터 연쇄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3. 도중의 대응

1) 지불 가격 인상과 인원 충원책

면주전 도중은 접방인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접방인들이 낙본하게 된 것은, 면주 값이 올랐기 때문이었다. 접방인들은 도중으로부터 진배용 면주의 수량을 복정(卜定) 받아 의무적으로 해당 수량을 조달했고 그 값을 도중으로부터 지불받았다. 그런데 당시 면주의 시중 구매가는 높이 뛰는데,⁸⁶⁾ 도중에서 지불하는 값은 예전대로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방인들은 본전을 잃을 수밖에 없었

81)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5면, 기축년(1889) 1월 20일 ; 39면, 경인년(1890) 1월 18일 ; 67면, 신묘년(1891) 1월 22일 ; 94면, 임진년(1892) 1월 17일

82)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7면, 기축년(1889) 2월 19일

83)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72~73쪽 <표 III-4> 참조

84) 고동환, 2013 앞의 책, 228쪽

85)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56면, 계묘년(1903) 정월 12일

86) 1891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물(紬物) 값의 상승폭이 4~5배에 이르렀다고 한다[『(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79면, 신묘(1891)년 6월 20일].

다. 도중에서 각방의 접방인들에게 지불하는 면주값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면주전 도중이 정부로부터 받는 수가(受價)가 고정되어 있었던 것과도 연동되어 있었다. 시전이 대정부거래를 통해 받는 수가액은 시가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본래 이것은 시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시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물가상승이 정부의 고정지불가격을 역전함에 따라⁸⁷⁾ 시전의 대정부거래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 정부 재정의 악화로 수가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⁸⁸⁾ 시전 도중의 경제 사정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실제 물량 조달자인 접방인에게도 여파를 미치게 되었다.

면주전 도중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접방인들의 납방과 퇴거를 어쩔 수 없는 ‘형세’나 ‘정세’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중의 일차적인 대응은 각방 접방인의 여건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 대책은 곧 지불 가격의 인상 즉 ‘증가(增價)’였다.

1889년 7월 면주전 별출차지는 각방이 낙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방에서 상납한 면주의 값을 올려주었다.⁸⁹⁾ 별출차지들은 1887년 10월, 1888년 10월, 그리고 1889년 1월에 진배했던 진헌 면주 12동(=600필)의 값을 당시 이미 각방에 지불한 상태였으나 이때 증가(增價) 조치하여 1필당 2냥씩 추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또 그 해에 진배한 염남수주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미 지불한 값에 1필당 2냥씩 더하여 지불하도록 결정하였다. 면주전은 매년 6월 염남수주를 모든 전궁(殿宮)에 1동(=50필)씩을 진배하고서 정부로부터 700냥(1필당 14냥)을 수가(受價)하였던 것이 상례였던 것⁹⁰⁾에 비추어보면, 1필당 2냥씩 값을 올린 것은 인상폭이 14% 이상이었다. 각방이 도중으로부터 지불 받는 면주값은 정부로부터 받은 수가액에서 각종 부대비용을 제한 후 하향책정됨⁹¹⁾을 감안하면, 접방인 입장에서의 상승폭은 더욱 컸을 것이다.

1890년 7월 접방인의 퇴거에 대한 구폐책이 본격 논의되었을 때에도,⁹²⁾ 그 해결책은 ‘증가’였다. 이때 판주(版紬)와 급대주(給代紬)는 증가하여 1필당 25냥씩 지불한다 하였고, 수주(水紬)와 진헌주(進獻紬)도 증가하여 1필당 20냥씩 지불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접방의 안정적 생업’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⁹³⁾ 1891년에도 판주와 급대주에 대한 증가 조치가 있었다.⁹⁴⁾

87) Owen Miller, 2007 앞의 논문

88) 고동환, 2013 앞의 책, 226~227쪽

89)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31면) 기축년(1889) 7월 22일

90) 『日本所在韓國古文書(한국사료총서 제46집)』, 국사편찬위원회, 京都大學所藏韓國古文書 綿紬塵關係文書 綿紬塵實態 一(문서번호: 1580).

91)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155쪽 <표 IV-6> 참조

92)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54면, 경인년(1890) 7월 29일

93)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54면, 경인년(1890) 7월 29일

94)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80면, 신묘년(1891) 7월 2일 ; 89면, 신묘년(1891) 10월 2일

<표 1> 1888~1895년 면주전의 세폐 수가액과 본색가(本色價) 및 증가(增價)의 추이

	진배량	1필당 수가 大同木	수가액의 최종 作錢		1필당 本色價	1필당 增價	1필당 최종 지불가 (②)	①과 ②의 차액 (비율)
			합	1필당 금액(①)				
1888년 5월	8동 (400필)	9필	11,569.80냥	28.92냥	6냥	14냥	20냥	8.92냥 (30.9%)
1889년 4월	8동 (400필)	9필	11,597.40냥	28.99냥	6냥	14냥	20냥	8.99냥 (31.0%)
1890년 12월	8동 (400필)	9필	16,453.10냥	41.13냥	6냥	24냥	30냥	11.13냥 (27.1%)
1891년 11월	8동 (400필)	9필	50,051.75냥	125.13냥	6냥	47냥	53냥	72.13냥 (57.6%)
1893년 6월	8동 (400필)	9필	31,805.73냥	79.51냥	6냥	37냥	43냥	36.51냥 (45.9%)
1895년 3월	8동 (400필)	9필	25,366.42냥	63.42냥	6냥	34냥	40냥	23.42냥 (36.9%)

* 전거 : 『歲幣受價冊』

- ① : 수가는 세폐주 1필당 대동목 9필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다양한 지불수단으로 지급되었으므로 代米·代布·發賣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作錢하였고 그 총합 금액은 『세폐 수가책』에 계산되어 있다. ①은 수가액의 최종 作錢 값을 진배량 400필로 나누어 1필당 실질적 수가액을 계산한 것이다. 그 값은 소수점 아래 세자리 수에서 반올림한 근사값이다.
- ② : 1필당 本色價에 增價된 값을 더한 값이다.

세폐 면주에 대해서도 188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增價) 조치가 있었다.⁹⁵⁾ 『세폐 수가책(歲幣受價冊)』에서도 도중이 세폐주 값으로 지불한 본색가(本色價)의 인상[增價] 사례가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에서 드러나듯, 세폐주 본색가의 인상[增價]은 도중의 수가 사정이 좋아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진배가 책정 원칙 자체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지불수단과 지불방식의 변동 속에서 수가액을 최종적으로 돈으로 바꾼 액수는 18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듯 정부로부터의 세폐 수가 사정이 좋아진 것은 ‘외획(外劃)’ 덕분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면주전은 1884년부터 정부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진배수가액을 『진배 수가미하책』이라는 장부에 세세히 기록하였다. 1884년 기준으로 면주전이 지불받지 못한 현금은 3만 냥이 넘었고 미지불 면포는 5천 필에 달했다.⁹⁶⁾ 그러나 1889~1891년 사이 정부의 체납금 문제는 ‘외획(外劃)’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를

95)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31면, 기축년(1889) 7월 22일 ; 49면, 경인년(1890) 7월 7일

96) Owen Miller, 2010 앞의 논문, 392쪽 <그림12-4>의 그래프 참조

보였다. 1888년 조선정부는 면주전에게 구래의 고정가격 대신 시장가격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였고, 중앙의 호조가 아닌 면주 생산지역의 관청으로부터 바로 대가를 지불받도록 하는 절목을 내려주었다.⁹⁷⁾

해당 시기 『별출차지맹문등록』에서는 특히 ‘해서분획전(海西分劃錢)’ 또는 ‘해서외획전(海西外劃錢)’에서 대한 언급이 눈에 띈다. 1888년 상주(上紬)·급대주(給代紬)·판주(版紬)를 진배하고서 받는 수가액 중 해서분획전은 1만 4천 냥이었다.⁹⁸⁾ 이렇듯 만 냥이 넘는 해서분획전에 대해 당시 별출차지들은 ‘적지 않은 수가(受價)’로 인지하였다. 이런저런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은 1천 냥 정도 뿐이었지만, 이를 통해서도 도중을 ‘보축(補縮)’할 방도가 있으리라 여겼다.⁹⁹⁾ 도중이 각방에 지불하지 못하고[未下] 있던 세폐주 값 3,250냥도 해서분획전을 통해 지불이 가능해졌다. 해서분획전을 통해 생긴 이러한 ‘여유’를 토대로 도중에서 각방에 지불하는 세폐주 값의 ‘증가(增價)’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불가격의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접방인의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인상폭이 꽤 컸다고는 하나 애초에 고정적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므로, 인상 이후의 값이 시가에 얼마나 준하게 되었을지 의문이다. 또 <표 1>에서도 보듯이, 도중은 여전히 정부로부터의 수가액에서 상당 부분을 제하고 접방인들에게 하향책정된 값을 지불하였고 도중에서 남기는 이문의 비율이 결코 줄지 않았으므로, 도중의 증가 조치가 접방인들에 대한 극적인 우대 조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가로 인한 절대적 가격의 인상은 오히려 당시 화폐 가치의 상대적 하락과 맞물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접방인이 1~2명밖에 남지 않은 1898년 무렵이 되면, 접방인에게 지불하는 면주 값도 시가에 따라 지불하기로 한다.¹⁰⁰⁾

지불 가격 인상 조치는 남아있는 접방인들이라도 붙잡아두려는 조치였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원을 영입하여 인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 한 방법은 출시인(出市人 또는 黜市人) 즉 이미 시전에서 내보낸 사람을 도로 들이는[還入] 것이었고, 또 다른 한 방법은 현재 구성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명씩 천거하여 들이도록[薦入] 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정부측의 요구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다. 1891년 6월 20일에 별출차지들은 평시서의 감결(甘結) 때문에 출시인을 환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론하였다.¹⁰¹⁾ 정부측에서는 당시 ‘국가에 큰 경사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전에서 벌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을 면죄[鮮罰]하여 도로 들이라고 하였다. 이는 국역(國役)에 동원할 시전의

97) Owen Miller, 2010, 앞의 논문, 394쪽

98) 『(戊子)別出次知盟文騰錄』 31면, 기축년(1889) 7월 22일

99) 『(戊子)別出次知盟文騰錄』 31면, 기축년(1889) 7월 22일

100) 『(戊戌)別出次知盟文騰錄』 7면, 무술년(1898) 3월 13일

101) 『(戊子)別出次知盟文騰錄』 78면, 신묘년(1891) 6월 20일

인원을 충원하라는 뜻이었다. 면주전은 이러한 평시서 감결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면주전 차지들은 다른 시전들처럼 1874년 이후에 출시(出市) 처분된 사람들을 도로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조건을 내걸었다. 출시인은 미납금[未奉]과 대출금[所負錢]을 그달 말일까지 갚아야만 했고, 기한을 넘길 경우 영원히 환입(還入) 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해당 「별출차지맹문입장」의 작성일이 6월 20일이었으니 단 열흘의 기한만 준 것이었다. 즉 면주전은 정부측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시전 내부의 원칙을 내세우며 무조건적인 환입은 막으려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²⁾

그러나 면주전 도중도 처벌된 도원들을 선처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시인 환입’에 대한 공론이 있었던 그 당시, 면주전 차지들은 보폐소의 소임을 맡을 사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하였다.¹⁰³⁾ 보폐소 소임은 본래 각방의 초실인들이 윤회로 돌아가며 거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초실인 중에서도 삭명(削名)된 사람이 있어서 맡을 인원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처벌이 면제된[鮮罰] 사람을 차출하여 보폐소 소임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1898년 무렵에는 시전 영위(領位)의 명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발적으로 출시인 3명을 환입시키기도 하였다.¹⁰⁴⁾ 앞서 서술하였듯이, 당시 면주전은 실무를 맡은 인원이 부족해진 문제에 당면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면주전 도중 차원에서의 좀 더 직접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1892년 4월에는 도중 인원의 모입(募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때의 별출차지맹문입장은 제목부터 「모입주선차지맹문입장(募入周旋次知盟文立章)」이었다. 이때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은, 대방부터 시행수까지의 모든 임원들은 아들, 사위, 동생, 조카 중 1명씩을 입참(入參)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¹⁰⁵⁾ 만약 이러한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남[他人]이라도 입참을 시키라고 하였다.¹⁰⁶⁾ 한편, 지참인(只參人)¹⁰⁷⁾에게도 1명씩을 추천하여 입참시키라고 하였다.¹⁰⁸⁾

이렇게 각 임원들이 1명을 데려와 입참을 시키는 것은 “천입(薦入)”이라고 표현하였는데,¹⁰⁹⁾ 이는 말만 ‘추천’일 뿐 강제성을 띠는 것이었다. 5월 그믐날을 기한으로

102) 출시인의 환입 과정에서 연령[年齒]과 직급[座次]의 기준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였는데[『(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80면, 신묘년(1891) 7월 2일 ; 85면, 신묘년(1891) 8월 9일], 면주전 차지들은 본래의 내부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103)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78면, 신묘년(1891) 6월 20일

104)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7면, 무술년(1898) 3월 13일

105)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00면, 임진년(1892) 4월

106)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00면, 임진년(1892) 4월

107) 지참인은 “유수(有數)하게 영입하지 않고 다른 일에 출역(出役)하여 온전히 사역할 수 없고 단지 재안(齎案)에만 참여하는” 도원을 일컫는 말이었다[『(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9면, 무술년(1898) 3월 28일].

108)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00면, 임진년(1892) 4월

109) 피추천자는 밀봉된 향통(緘筒)에 넣어서 보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06면, 임진년(1892) 9월 17일].

정하여 그 전까지 추천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한을 넘겨서도 추천이 없으면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다.¹¹⁰⁾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실효는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한을 넘긴 그해 9월 7일, 임원으로서는 친지가 있으면서도 아직 1명을 데려와 입참시키지 않은 실태가 논의되었다.¹¹¹⁾ 친지가 없어서 천입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친지가 있는데도 아직 입참시키지 않은 것은 무엄한 일로 여겼다. 그러나 이들을 바로 처벌하지는 않았고, 다시 그달 9월 말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고, 그 기한마저도 넘기면 삭출벌(削黜罰)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¹¹²⁾ 이 기한에 대해서는 열흘후인 9월 17일에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¹¹³⁾ 즉 인원 충원이 목표였던 면주전 차지들은 강제 사항을 미이행한 사람들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충원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원이라는 명색만 유지하며 도중과의 왕래가 없던 ‘외방인(外方人)’에 대해서는 본래 부여하던 혜택을 끊음으로써 궁핍한 도중의 재산을 절약하고자 하였다. 1889년 10월 면주전 차지들은 이제 앞으로는 외방인에게 세폐수가의 여리(餘利)를 분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¹¹⁴⁾ 그러나 계속 왕래가 있는 외방인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계속 보장해주려 하였다. 1889년 정씨 십좌의 경우 도성에서 10리가 넘지 않는 지방에 있었고 경기 내에 거주하므로 외방이라 하기 곤란하므로 예외적으로 원액(原額)과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¹¹⁵⁾

2) 간부진의 실무 투입과 도중의 성격 변화

면주전 도중은 인원수를 늘리려는 노력도 해야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줄어들어 있는 인원으로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했다. 실무의 소임을 맡아야 할 접방인들이 줄어들게 되자, 이제는 대방의 삼좌·오좌의 좌상(座上) 간부진들도 실무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유사(有司)의 역(役)에 투입되었다. 앞서 1892년 4월 대방의 간부진들에게 의무적으로 1명씩을 천입하라고 했을 때, 5월 기한을 넘길 경우 수삼좌(首三座)부터 시행수(時行首)까지는 일종의 별로써 유사(有司)의 역(役)을 1년간 수행하도록 하였다.¹¹⁶⁾ 그해 9월에는 좌상의 간부진들이 유사의 역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공론하였다. 물론 이때에는 좌상에게 유사의 역까지 맡기는 것은 무리이

110)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100면, 임진년(1892) 4월

111)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104면, 임진년(1892) 9월 7일

112)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104면, 임진년(1892) 9월 7일

113)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106면, 임진년(1892) 9월 17일

114)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34면, 기축년(1889) 10월 14일

115)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34면, 기축년(1889) 10월 14일

116) 『(戊子)別出次知盟文牒錄』 100면, 임진년(1892) 4월

니 잠시 보류한다고 하였다. 다만 시행수와 상중(喪中)인 사람은 윤회로 번갈아가며 유사에 투입하였고, 40명 정원의 유사가 채워지면 이들도 유사의 역을 중단하라고 하였다.¹¹⁷⁾ 아직 간부진에게 실무를 맡기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긴 했으나, 실무적인 유사를 맡을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간부진의 투입을 고려하기 시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방은 이제 물량의 실질적 구매 조달에도 투입되었다. 본래 시전 내에서 실질적 물품 구매 조달자는 각방의 접방인들이었다. 도중은 그것을 납품받아 정부에 진배하고 그에 대한 값을 치러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정부로부터 진배에 대한 대가를 수가(受價)할 때 대방 구성원들은 그 남은 이문을 분아(分兒) 받는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즉 시전 대방은 소속 상인들의 대표자로서 대정부거래의 중개자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접방인이 줄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891년 6월 별출차지들은 접방인이 적어진 상황에서 각방의 주물(紬物)을 도중이 직접 나서 무역하는 일에 대해 공론하였다.¹¹⁸⁾ 다음달인 1891년 7월 별출차지는 “대저 도중은 1필도 조비함이 없었으니 허다한 진배를 어찌 지탱하여 담당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이제부터는 대방에서 직접 면주를 무역[貿紬]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⁹⁾ 면주전 내에서 무주(貿紬)의 일을 담당하던 무주계(貿紬契)는 본래 비방(裨房) 산하의 조직이었는데,¹²⁰⁾ 접방인의 부족으로 비방 차원에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대방에서 직접 무주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급대주(給代紬)의 진배를 맡았던 급대주계도 낙본이 매우 많아지자 도중이 직접 급대주의 진배 전체를 맡게 되었던 정황도 확인된다.¹²¹⁾

별출차지들은 대방이 직접 면주 구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방에서 따로 무주차지(貿紬次知) 5명을 차출하도록 하였다. 이때 5명은 좌상(座上)의 차지 2명과 ‘오래된 접방인 중에서 주물(紬物)에 익숙하고 객주와 거래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¹²²⁾ 인원 부족으로 대방의 좌상 임원층이 무주차지를 맡을 수밖에 없었으나 면주 실거래에는 오랜 경험자의 도움이 불가피하였다.

이상과 같이 면주전 도중 즉 대방 임원층은 본래 접방인들이 담당하였던 조직 내 실무와 물자의 실거래에 직접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영업인과 임원층의 구분 속에서 조직의 이문만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면주전이 접방인들을 붙잡고 인원을 충원시키려던 대책은 결국 실패했다. 1898년 접방인은 1~2명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며,¹²³⁾ 1900년대 면주전의 실태를 기록

117)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103면, 임진년(1892) 9월 7일

118)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79면, 신묘(1891)년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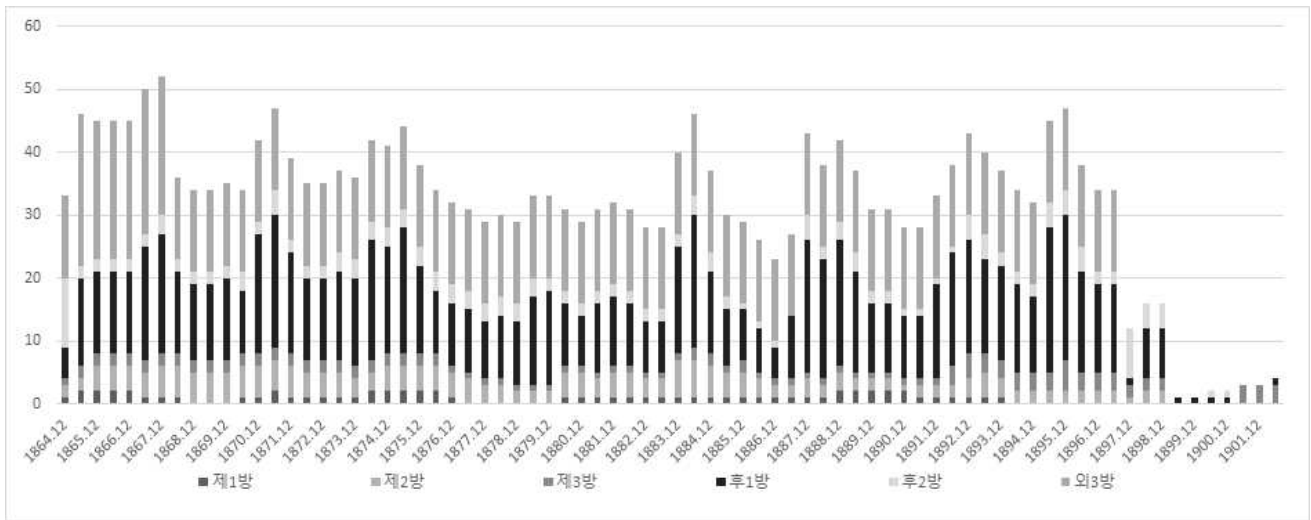
119)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81면, 신묘(1891)년 7월 2일

120)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45쪽 <그림 III-1> 참조

121)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89면, 신묘(1891)년 10월 2일

122) 『(戊子)別出次知盟文謄錄』 81면, 신묘(1891)년 7월 2일

123)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7면, 무술년(1898) 3월 13일



* 전거: 『방세책』

* 비고 : 이 그래프에 표시되는 제1·2·3방의 방세 납부자 수는 외3방에 일시 파견된 구성원의 수를 제외한 수에 해당한다. 외3방에는 제1·2·3방의 구성원들이 번갈아 가며 ‘충정(充定)’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各房房稅冊』(河合文庫, 카-14 199737)은 면주전 비방(裨房)에서 각방의 세부 조직별로 할당된 방세를 누가 언제 납부하였는지 기록한 정간책(井間冊)인데, 이 장부에서 제1·2·3방의 기록은 대부분 외3방 방세를 누가 납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3방 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록된 인물들은 대방측 『방세책』에서도 외3방 방세 납부자 명단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外三房房稅輪回充定座目』(河合文庫, 호-17 199997)은 각 개별구성원이 언제 외삼방에 충정(充定)되어 방세를 납부했는지 기록한 장부인데, 여기에서도 『각방방세책』에서 제1·2·3방의 일원으로서 외3방 방세를 납부했다고 한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하며 해당 날짜에 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제1·2·3방에서 머무르며 영업하였던 사람들은 『각방방세책』에서 해당 방의 井자 칸에 “時接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대방측 『방세책』에서도 제1·2·3방의 방세 납부자로 기록되고 있다.

<그림 3> 1864~1901년 면주전 각방 방세 납부자의 구성과 인원수 변화

한 자료에서도 면주전의 영업자 즉 접방인이 1명뿐이었고 도중 관계인만 40여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²⁴⁾ <그림 3>의 방세 납부자의 변화에서 보듯이, 제1방은 1864년부터 이미 1~2명의 방세 납부자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다가 사라졌고, 그나마 약 10~20명의 인원을 꾸준히 유지해왔던 후1방도 1897년 이후 그 수가 급감했다. 또한 1868년 이래 13명의 고정적 방세 납부자를 가지고 있었던 외3방도 1897년 이후로는 방세가 끊기게 된다.

접방인이 사라져 소임을 맡을 사람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도중 조직도 통폐합을 거쳤다. 1898년 1월 면주전 산하의 각 소(所) 조직의 소임(所任)을 맡을 사람이 없게 되자, 소를 통폐합하여 보용소와 왜단소만 남기게 된다.¹²⁵⁾ 보용소와 왜단소는

124) 『日本所在韓國古文書(한국사료총서 제46집)』, 국사편찬위원회, 京都大學所藏韓國古文書 綿紬塵關係文書 綿紬塵實態 二(문서번호: 1581)

125)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2면, 무술년(1898) 1월 19일

대방의 자금을 관리하고 생식(生殖)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양소(兩所)’였으므로, 다른 소 조직을 이쪽으로 통폐합했던 것이다.¹²⁶⁾ 1900년의 기록에 따르면, 세폐수가전을 관리하였던 보폐소도 이 양소와 함께 잔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¹²⁷⁾ 1899년 3월에는 도가(都家)의 소임마저 폐지하였다. 도가는 시전 도중의 중요한 물품을 맡기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중요한 물품도 없고 ‘단지 남묘(南廟)에 치성하는 한 가지’만 남았으니 이때 필요한 잡물은 외3방에 보관하도록 하고 도가의 일은 폐지한다는 것이었다.¹²⁸⁾ 1905년에는 비방(裨房)과 난전차지(亂塵次知)까지 모두 혁파되었다.¹²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00년대에 접어들면 면주전 도중의 관심은 더 이상 ‘인원 보충’이나 ‘시전 운영의 정상화’에 있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도중의 재산만이라도 어떻게 지켜내려는 의지만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면주전은 1898년 3월 광주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매각하였고, 1904년 6월에는 도가 건물마저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을 도중 인원에게 분배하였다.¹³⁰⁾ 1905년쯤이 되면 『별출차지맹문등록』의 내용이 거의 ‘출시인(出市人 또는 黜市人)의 소부전(所負錢, 대출금)’에 대한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진다. 물론 ‘출시인 소부전’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종종 있어 왔지만,¹³¹⁾ 이제는 다른 내용 없이 그 부분만 남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분소(分所)의 외인(外人)’들에게 대출해주었던 사대전(私貸錢)을 세세히 수집(收執)하여 ‘도중의 공물(公物)’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피력하였다.¹³²⁾

1916년의 기록에 따르면 면주전 점포 건물은 인력거장, 잡화상, 나무신전 등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이때 면주전은 “우리 도중 인원은 지금 130여 명이 있음에 매달 그믐날에 모이나 실제로 면주전이 없는 이상에야 도중이 있은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였다.¹³³⁾ 즉 이제 면주전은 점포에서 실제의 영업을 하는 접방인은 사라졌고 도중 조직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면주전 조직의 와해 과정은 ‘각방 - 비방 - 대방’의 순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선 <그림 2>에서 보듯이, 1896년 이후 접방인의 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비방 조직은 한동안 더 오래 유지되다가 1905년에야 혁파되었다.¹³⁴⁾ 이 시간차는 비방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방은

126) 예선소와 조비계는 왜단소에 붙이고, 수주1소와 호상소는 보용소에 붙인다고 하였다[『(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2면, 무술년(1898) 1월 19일].

127)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36면, 경자년(1900) 1월 27일

128)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30면, 기해년(1899) 3월 19일

129)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59면, 을사년(1905) 1월 30일

130) 須川英德, 2010 앞의 논문, 376쪽 ;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10면, 무술년(1898) 3월 28일 ; 61면, 병오년(1906) 2월 27일

131)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20면, 기축년(1889) 3월 15 ; 23면, 기축년(1889) 3월 25일 외 다수

132)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22면, 무술년(1898) 12월 16일

133) 『매일신보』 1916년 2월 29일 (3면 1단)

134) 『(戊戌)別出次知盟文謄錄』 59면, 을사년(1905) 1월 30일

일반 도원들의 집합체였고 대방 아래 상하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비방 역시 별도의 삼소임(三所任)을 둔 조직이었고 생식계(生殖契)라는 별도의 독립적 자금 관리 조직을 두고 있었으므로¹³⁵⁾ 그 자금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¹³⁶⁾ 비방은 존속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비방은 면주전 구성원들의 재안(齎案)을 관리하고 잿돈[齎錢]을 지급하는 곳이기도 했으므로,¹³⁷⁾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 비방 조직마저 와해된 이후에도 대방 조직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그림 1>에서 보았듯이, 비방 인원이 급감하며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도 대방의 인원수는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그 인원을 유지하였다. 1905년 비방이 혁파된 이후에도 대방의 원액은 40명가량으로 반등되었다. 면주전의 영업이 중단된 이후 1916년까지도 매달 말일마다 회합을 가졌다는 130여 명의 면주전 도중 인원은 곧 이 대방 구성원들에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과 같이 면주전은 실제 영업인들이었던 접방인들을 잃고, 그 기반 조직이었던 비방 조직도 잃은 후, 간부진에 해당하는 대방 조직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순차적 와해 과정을 거치면서, 시전의 기본적 영업 기능은 사라졌으며 도중 차원의 금융적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 이렇듯 면주전의 와해 과정이 일시적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그 간부진에 해당하는 대방 도중과 실제 영업인이었던 개별 접방인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접방인들이야 시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납방하고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대방의 간부층은 시전에서 오랜 연한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 시전 재산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했을 것이며, 그만큼 시전의 운명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쉽게 탈퇴를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지녔던 인적 네트워크 역시 끊어버리기 어려운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맺음말

시전과 정부의 거래가 더이상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낙본’의 손해를 야기하였던 19세기 말, 면주전 접방인들은 시전을 떠났다. 시전 조직의 근간이었던 접방인들의 이탈 현상은 시전의 각 세부조직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마비시켰다. 이에 대해 면주전 도중은 각방 지불 가격의 인상, 접방인의 모집, 간부진의 실무 투입, 지방 외획전의 추심, 대출금 상환 노력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 대응책이

135)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61쪽

136)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29면, 기해년(1899) 3월 19일

137) 『(戊戌)別出次知盟文牒錄』 20면, 무술년(1898) 12월 16일

시의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후대의 연구자에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다만 면주전의 위기 상황과 그 대응 과정의 천착을 통해, 면주전 내부 각층의 조직과 사람 각각이 지녔던 성격과 특징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시전은 정부와의 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조직은 아니었다. 상인들이 시전에 ‘접방’했던 것도 대정부거래의 특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전 도중은 각방의 영업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 각 구성원들의 상례마다 상부상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중의 금융적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은 시전 영업이 이미 중단된 최후의 순간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대정부거래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이후 시전 도중의 역할은 그 둘이 핵심이었을 것이다.

개항 전후 또는 ‘전근대와 근대’의 사이에서 시전 상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전 도중의 금융적 기능이 어떠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¹³⁸⁾ 한편 이익을 찾아 시전을 떠났던 개개인의 접방인들의 향후진로에 대한 추적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고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만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138) 구성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 금융적 지원을 하였던 전통적 상업기구의 사례는 개성상인 연구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양정필, 2012,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조선의 중심적 상업기구였던 도성 시전의 금융적 기능도 충분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전 도중이 개별 도원들에게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음은 고동환, 2013 앞의 책, 271쪽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본고에서 활용한 『별출차지맹문등록』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면주전의 대출금 관리 방식과 면주전 산하 각 계소 조직의 회계장부 기록을 함께 고찰한다면, 시전의 금융적 기능도 구체적으로 연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동환, 2013,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 김동운, 2001 『박승직상점 1882~1951년』, 해안
- 변광석, 2001 『朝鮮後期 市廛商人 研究』, 해안
- 양정필, 2012,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Owen Miller, 2007 “The Silk Merchants of Myonjujo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on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고동환, 2002 「조선후기 시전(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 고동환, 2008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면주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 권태억, 1980 「韓末·日帝初期 서울地方의 織物業」 『한국문화』 1
- 김미성, 2017 「조선후기 면주전과 명주 생산·유통구조」,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미성, 2018 「조선후기 시전의 노동력 고용과 工錢·雇價 지출」 『한국문화』 82
- 須川英德, 2010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Owen Miller, 2010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우용, 2002 「근대 종로의 상가(商街)와 상인(商人)」 『종로: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 전우용, 2004 「근대 이행기(1894~1919) 서울 시전 상업의 변화」 『서울학연구』 22
- 조영준, 2008 「19世紀後半 内需司와 市廛의 去來實態」 『서울학연구』 31
- 홍성찬, 2002 「韓末·日帝下の 서울 鐘路商人 研究 -布木商 金泰熙家の ‘壽南商會’ 運營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16
- 須川英德, 2003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廛文書を中心に」 『史料館研究紀要』 34